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60
----------	------

제출연월일: 2019. 8.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사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제도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 감면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9. 3. 14. ~ 4.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 결제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의2제1항제14호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단위: 천 원)

구분	2018년도 연간징수액	할인내용(할인율 10%)			손실예상액 최대치 합계
		제로페이 30% 사용 (4개월)	제로페이 50% 사용 (4개월)	제로페이 100% 사용 (4개월)	
사용료	2,616,397	26,160	43,600	87,200	87,200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제로페이 결제 시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로 세입의 순 감소가 예상되나, 그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이므로 미첨부

4. 작성자

- 교통지도과 행정8급 김영아 (02-2286-57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8. 2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경오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19. 8. 16. /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9. 8. 19.

다. 상정일자: 2019. 8. 28.

(제247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안전건설교통국장

나. 제안이유

소상공인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영 주차장 사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 감면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9. 3. 14. ~ 4.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일부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의2제 1항에서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혜택을 높이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에 대해 주차요금 1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는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신용카드와 달리 큐알코드를 인식한 앱을 통해 결제 액을 쓰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넘어가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입니다.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 결제시 수수료가 0%이며 소비자는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한시적인 주차요금 감면 정책도 제로페이 이용 저변확대 및 결제수단 다양화, 시민에 대한 주차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해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단기간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례 제정이란 점이 있으며, 제로페이 정책은 많은 홍보예산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사용자가 적다는 점은 앞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